『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개 요

- 2016. 9. 28.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우리 협회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함.

2. 제정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1)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2)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됨.

3. 적용대상

제2조 (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등(57개 기관)

- <u>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u>
- 중앙행정기관(42개 기관)
-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u>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u>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260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u>정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곳이거나 이들 기관이 재출자·재출연한 곳은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으로 분류됨</u>(5·18기념재단과 대한노인회, 리조트를 운영하는 알펜시아 등),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장(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선임 등을 동의하는 기관·단체도 해당(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국립암센터, 해외건설협회,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15. 4월 기준)

○ 각급 학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

※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병원 의사,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 공중보건의사, 공직유관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속 의사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학교법인이 설립한 병원소속 의사도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임.

※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시간강사는 2018. 1. 1. 부터는 포함될 예정).

□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16. 6월 기준)

○ 방송사업자(320개 기관), 신문사업자(3,400개 기관), 뉴스통신사업자(21개 기관), 인터넷신문사업자(6,149개 기관)

○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7,320개 기관)

※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우리 협회는 의협신문, 협회학술지 등 정기간행물을 등록하여 발행하는 언론사로서 이에에 해당함. 다만, 이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발행인인 회장을 비롯하여 편집인(홍보이사, 학술이사)·발행업무담당직원 등이 적용대상자에 포함됨.

□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실무수습중인 임용전 교육자,「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비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 등이 아닌 자)

제11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 각종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 이에 정부를 대신하여 의사에 대한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협회 중앙회 및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각시도의사회도 법령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개원의의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혹은 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하는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 해당될 경우, 법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됨

4. 부정청탁의 방법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은 법인을 위한 것이며 결국 그 효과도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함.

-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개별 벌칙조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법인은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결국,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개별 벌칙조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법인은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

※ 우리 협회에서 언론홍보를 위하여 홍보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일정 언론사 노출에 따른 비용지급의 방식), 홍보대행업체를 통한 언론사와의 접촉 및 청탁이 결국 우리 협회의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홍보업무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부정청탁 대상직무 및 예외사유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

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우리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제5조 제1항 제1호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중 '면허'와 관련된 사항, 제13호 행정지도, 단속, 감사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 중 '행정조사, 세무조사, 국정감사' 등의 사항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 다만, 제5조 제2항 제2호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및 제6호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서 제외됨.

- 제7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6. 수수 금지 물품 등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직무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 시,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 **'재산적 이익'**으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편의 제공'**으로는 음식물·주

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경제적 이익'**으로는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이 있음.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강의, 강연 등과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 등을 통해 사례금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상한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제6조 관련)

1. 법 제8조제3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한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 관련)

-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	40	30	20

-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	30	20

- 법 제2조제2호 다목,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

□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동일한 공직자등에게 금품 등의 제공의 의사표시 약속한 후 이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반행위(제공 행위)가 성립함.

7. 징계 및 벌칙, 과태료 등

제2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제23조 (과태료 부과)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

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공직자 등에게는 징계 및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수수·공여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함.

8. 기타

직책	적용여부	비고
사립학교 교수, 소속의 (예: 세브란스병원 소속의)	○	
명예교수, 겸임교원	X	시간강사는 2018. 1. 1. 부터 적용됨
공공기관,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	○	상임 및 비상임 모두 포함
행정기관 무기계약근로자	X	임기제 공무원은 포함
공중보건의	○	